

제 목: 「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」개정

1 추진배경

- □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「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^{*}」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사전신고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.
 - * 외국환거래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 설립시 금융위·금감원에의 신고·보고 절차의무 등을 규율
 - 이번 규정개정은 금융업계가 해외투자시 겪었던 불편함을 완화 하여 금융회사의 **자유로운 해외진출을 촉진**하기 위함입니다.

2 주요내용

- 1. 연간 누계 2천만불 이하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.(제7조제1항)
- □ 기존에는 역외금융회사(역외펀드) 투자시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 신고를 해야 했으나,
 - 연간 누계 투자액이 2천만불* 이하 투자시, 투자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가능토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.
 - * 현재 해외법인투자는 연간누계 3천만불 이하의 경우 이미 사후보고가 허용되어 있음 (2천만불 기준금액은 역외금융회사 평균 투자금액·투자빈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기 준으로서 1년간 제도 운영후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재조정할 계획)

2.	투자금액의 보고할 의무	 	 	지분율	변동에	대해	일일이
	금 융회사의 변동으로	 	 				

-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최초 신고 후, **투자금액의 변동이** 없는 단순 지분율 변동의 경우 변경보고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.
- 3. 해외지점의 영업활동(부동산·증권·1년 초과 대부거래)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였습니다.(제12조제2항)
- □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부동산·증권거래,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가 부여되었으나,
 - 위와 같은 **일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**를 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습니다.
 - 3 향후 일정

특징을 감안하여,

□ 본 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로서, 고시한 날('22.3.3.)로부터 시행됩니다.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

- □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
 - □ (개요) 현행 금융회사의 해외투자 관련 신고제도는 ¹ 각 금융업권별
 관련법규와 ²외국환 거래법규로 이원화
 - ① (업권규제) 금융회사의 유동성 및 외화자산 투자리스크 등 금융 회사의 대외건전성을 감독하는 목적
 - ② (외국환규제) 경제 전체적인 해외투자내역 파악을 통해 외국환 시장의 수급과 대외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
 - □ (내용) 금융회사의 금융·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(증액투자 포함)시,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
 - 다만, 누적 **3천만불 이하**의 투자시에는 **사후보고** 가능('20.4월 개정)
- ②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현황
 - □ 국내 금융회사의 **해외직접투자 규모**는 지난 5년간(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, '15년~'19년) 3**배 가량 증가**
 - 해외직접투자의 방식도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대신, 역외 금융회사(역외펀드)를 통한 간접투자 비중 증대

